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17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▢ 제안이유

○ 2023. 12. 31.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.

▢ 주요내용

○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2조)

▢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▢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▢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▢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▢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▢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3. 6. 23. ~ 2023. 7. 13. (20일간)

▢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○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치행정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윤 충 오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팀장 이 종 훈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신 지 희 (행정 2156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설치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12조(설치) ② ----------2028년 12월 31일-----.